

#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33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1. 28  
다. 상 정·의 결 일 자 : 2003. 12. 2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및 한도액을 조정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 탄력적 운용

새부사업명 및 용도	당 초		변 경		비 고
	융자기간	지원한도액	융자기간	지원한도액	
1. 경영안정자금	3년(2년거치 1년4회 균분상환)	1억원이내	3년	3억원이내	
2. 기술개발자금	3년(2년거치 1년4회 균분상환)	1억원이내	3년	3억원이내	
3. 시설현대화 자금	3년(2년거치 1년4회 균분상환)	1억원이내	5년	5억원이내	
4. 유통현대화 자금 ○ 시장제개발 자금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8억원이내	15년	8억원이내	

○ 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 조정

구 모	종업원20인미만 자본금2억미만	종업원20인이상 자본금 2억이상	비 고
1. 경영안정자금	1억5천만원	3억원	
2. 기술개발자금	1억5천만원	3억원	
3. 시설현대화자금	2억5천만원	5억원	
4. 유통현대화자금 ○ 시장재개발자금	4억원	8억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 발생액(56,000천원)으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이차 보전금(3%이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종업원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용자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할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12.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